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1150
- 제 출 자 : 김현기 의원(외 15명)
- 제 출 일 : 2016년 4월 21일
- 회 부 일 : 2016년 4월 22일

2. 제안이유

-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누락되어 의사결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시의회에서 삭제한 안건을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재상정하는 경우,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의회의 비효율적 심의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전절차 이행을 의무화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 나. 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상정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5. 검토 의견

가.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논의의 실익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사전절차 이행을 의무화 하고(안 제11조제1항 개정), 서울시의회에서 안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여 수정 의결시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상정할 수 없도록(안 제11조제3항 신설)하려는 것인바, 포괄적으로 규정된 조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집행부의 느슨한 법령집행을 방지하고, 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세부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권력균형과 견제의 원리상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의결이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법 관련 조문〉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세부보고 절차 마련(안 제11조 제1항)

○ 안 제11조제1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진행할 때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인바, 의결절차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절차적 보완을 요구하고, 의회와의 상호유기성을 높이는 공유재산 관리상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 집행부(재무국 자산관리과, '16.5.23)는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시의회에 상정되는 경우 투자심사 결과 등 중요한 참고자료가 누락될 수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개진함.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u>시장</u> 은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u>시장</u> 은 <u>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u> ----- ----- -----.

사업추진에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는바,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 서울시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공유재산 관리계획 삭제 및 재상정 조치건수에 의하면, 삭제된 사안은 총 14건이며, 삭제 후 재상정 된 사안은 총 11건에 이르고 있음(참고자료①).
- ※ 집행부(재무국 자산관리과, '16.5.23)는 의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재상정할 수 없도록 할 경우 정책사업 집행이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함.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참고자료]

구분	삭 제		재 상 정	
	건	사 업 명	건	사 업 명
14년 1차 (14.4월)	취득1처분1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		
14년 2차 (14.6월)			취득1처분1	국공유 상호점유재산 교환
15년 1차 (15.3월)	취득1처분1	시유재산 현물출자 및 권리취득(수서동 721-1 외6)		
15년 2차 (15.4월)			취득1처분1	시유재산 현물출자 및 권리취득(수서동 721-1 외6)
15년 3차 (15.7월)	취득1처분1	시유재산 현물출자 및 권리취득(수서동 727)		
15년 4차 (15.9월)	취득1처분1	시유재산 현물출자 및 권리취득(수서동 727)	취득1처분1	시유재산 현물출자 및 권리취득(수서동 727)
16년 정기 (15.12월)	취득1처분1	방화동 공주주택현물출자 및 권리취득 (강서구 방화동 850)	취득1처분1	시유재산 현물출자 및 권리취득(수서동 727)
	취득1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서초구 염곡동 300-3외1)		
16년 1차 (16.5월)	취득1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서초구 염곡동 300-3외1)	취득1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 (서초구 염곡동 300-3외1)
	취득1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 (광진구 구의동 626-1 외9)		
	취득1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 (중로구 평창동 146-16 외8)		
16년 2차 (16.7월)			취득1	구의유수지 활용 행복주택 건립 (광진구 구의동 626-1 외9),
			취득1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 (중로구 평창동 146-16 외8)
합계	14		11	